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

제출년월일 : 2011. 2. 15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공동구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3조부터 제44조의3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나.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공동구 협의회로 하고 공동구 협의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안 제5조)
- 라. 공동구를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는 점검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부터 제44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

관련사업계획서 : 불임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1. 4~ 2011. 1. 24(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방침결정문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 현행 조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 및 제44조” 를 “제43조부터 제44조의 3”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담”이란 관리비, 점용료 및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공동구의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중앙제어장치(중앙감시 설비),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점용자”란 공동구에 수용된 상·하수도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점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으로써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안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제목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공동구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의 2”로 하며,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안산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안산시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같은 조제2항·제4항·제6항, 제4조 제목·제6조제1항·제7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중 “관리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구 관리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안산시 공무원
2. 안산소방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 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 안전 및 방제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심의
2. 법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제44조의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제4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 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2호,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중 “협의”를 각각 “심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법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제9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에 대하여 매일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정밀점검 : 전 회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긴급점검 : 공동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4조제4항” 을 “제44조의 3제2항” 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44조제5항” 을 “제44조의3제3항” 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구 관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건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이 태 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리정보담당 이 준 승
	담당자 성명·전화	이 준 승 (행정 243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3조부터 제44조의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담”이란 관리비, 점용료 및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공동구의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중앙제어장치(중앙감시설비),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점용자”란 공동구에 수용된 상·하수도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점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써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안설비 등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공동구관리협의회)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공동구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장은 관리협회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p> <p>⑤ 위원은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수탁기관·공동구점용자 등의 소속직원을 7인으로, 민간 전문가를 2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지명 위촉한다.</p>	<p>제3조(공동구협의회) ①제39조의 2... ...심의 또는 자문...안산시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p> <p>② 협의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③.....부시장</p> <p>④협의회.....사유로.....</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p>
<p>⑥ 위원장은 관리협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p>	<p>1. 안산시 공무원 2. 안산소방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 예정자의 소속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및 방제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p>⑥협의회.....</p>
<p>제4조(관리협의회 기능) ① 관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공동구 예산 및 관리비용</p> <p>2. 공동구 점용허가 신청의 적격여부</p> <p>3. 공동구의 활성화 방안</p> <p>4. 점용시설 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p> <p>5. 그 밖에 공동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② (생략)</p>	<p>1. 법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심의 2. 법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제44조의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제4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 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제6조(회의) ① <u>관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u></p>	<p>제6조(회의) ① <u>협의회</u></p> <p>.....</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용시설) (생략)</p>	<p>제7조(수용시설)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2. 그 밖에 <u>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하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에 <u>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하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u></p>
<p>제8조(관리위탁) <u>시장은 법 제1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u></p>	<p>제8조(관리위탁) <u>시장은 법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u></p>
<p>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p>	<p>1.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p>
<p>2. <u>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u></p>	<p>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p>
<p>제9조(공동구의 관리) ① ~ ④ (생략)</p>	<p>제9조(공동구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1. <u>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육안 점검</u></p>	<p>1. <u>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에 대하여 매일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u></p>
<p>2. <u>정기점검 : 소방관서, 수용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점검</u></p>	<p>2. <u>정기점검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u></p>
<p>3. <u>정밀점검 : 민간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구조물 및 수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u></p>	<p>3. <u>정밀점검 :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u></p>
<p>제10조(점용·이용신청 등) ① <u>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 점용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10조(점용·이용신청 등) ① ... 제44조의 3제2항.....</p> <p>.....</p> <p>.....</p>
<p>② <u>시장은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②.....</p> <p>.....<u>협의회 심의</u>.....</p> <p>.....</p>

현행	개정안
<p>제12조(점용료 및 관리비)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료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 1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p> <p>② (생략)</p> <p>③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u>관리협회의 협의</u>를 거쳐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p> <p>제14조(수당) <u>협의회에</u>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점용료 및 관리비) ① ... 제44조의3제3항.....</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협의회</u> <u>.....심의</u>.....</p> <p>.....</p> <p>제14조(수당)..... <u>범위에서</u>.....</p> <p>.....</p> <p>.....</p> <p>.....</p>